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

Australia New zealand Non Tariff Barriers Issue

호주 뉴질랜드,
한국 식품 수출 시
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주의

한국 과자류 제품, 알레르겐 미표기로 호주 총 14건, 뉴질랜드 총 6건의 리콜 사례 확인

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시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리콜 사례를 분석한 결과,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산 과자류 제품의 사례가 다수 확인됨. **이에 한국 식품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공고함**

1. **배경 : 2023년 3월과 7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과자 제품이 식품기준코드(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, ANZFSC)에 규정된 달걀, 참깨, 아몬드, 땅콩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(알레르겐)을 식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리콜(시장 회수)됨.**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정한 식품기준코드(ANZFSC)를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며, **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의 경우 2021년 2월 25일 식품기준코드(ANZFSC)에 강화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이 반영된 바 있음. 따라서 2024년 2월 25일 이후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기존 식품을 사용할 수 있음. 이에 본 기사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식품에서 주로 확인되는 식품 알레르겐 미표기 문제와 관련하여,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함**

2. **대상 품목 :** 호주와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식품

3. **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(개정)**

(*식품기준코드(ANZFSC) Standard 1.2.3과 표 9 개정)

[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필수 표시 항목]

① 식품 라벨에 필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총 11개로 지정함(기존 10개)

(기존) 땅콩(peanuts), 견과류(tree nuts), 우유(milk), 달걀(eggs), 깨(sesame seeds), 어류(fish), 갑각류(shellfish), 대두(soy), 루핀 콩(lupin), 밀(wheat)

(변경) 땅콩, 견과류, 우유, 달걀, 깨, 어류, 갑각류, 대두, 루핀 콩, **밀과 글루텐 함유 곡물, 아황산염(10㎎/㎏ 이상)**

[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시 주의사항]

①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라벨에 표시할 경우, **식품기준코드(ANZFSC) 표9-3에 규정된 필수 표기 사항(Mandatory declarations)에 따라 하기 표에 지정된 성분 명칭(영문명)을 사용해야 함**

※ 식품기준코드(ANZFSC) 표9-3 필수 표기 사항(Mandatory declarations)

분류	지정 명칭	분류	지정 명칭
아황산염 (10㎎/㎏ 이상 함유)	아황산염(sulphites)	**루핀콩**	루핀콩(lupin)
밀과 *글루텐이 함유된 곡물	밀(wheat), 보리(barley), 귀리(oats) 호밀(rye) **(※지정 명칭 옆에 '글루텐(gluten)' 표시 필요)**	**우유**	우유(milk)
***견과류**	아몬드(almond), 브라질너트(Brazil nut), 캐슈넛(cashew) 등	***연체동물**	연체동물(mollusc)
갑각류	갑각류(crustacean)	**땅콩**	땅콩(peanut)
달걀	달걀(egg)	**참깨**	참깨(sesame)
생선	생선(fish)	**대두**	대두(soy, soya or soybean)

* 견과류(tree nuts), 연체동물(molluscs), 곡물(cereals)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할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별 성분을 지정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

** 연체동물의 경우 알레르기 필수 표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, 알레르기 성분으로 표기 시 하기 표에 따라 작성해야 함

②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**다른 식품 성분명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함**

(예시) 말토덱스트린(**밀**)/maltodextrin(**wheat**), **참깨** 씨/**sesame seeds, 보리(글루텐)/barley(gluten)**

③ 식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별도 설명 문구를 작성할 **경우 '포함(contains)'을 사용하여 해당 성분명 바로 옆에 작성해야 함**

(예시)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에 대한 별도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: 파스타(**밀 포함**)/pasta(**Contains wheat**)

※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정된 식품 알레르기 표기 기준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개정 기준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행되며, 개정 기준의 상세 정보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「알레르겐 라벨링(Allergen labelling)」에서 확인할 수 있음

출처

FSANZ, Current food recalls, 2023.01~2023.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
MPI, Recalled food products list, 2023.01~2023.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
FSANZ, Allergen labelling(2022.07 업데이트)